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능)제2호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여성·가족보육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
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4.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
5.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
6. 공익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
7.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노인·장애인복지 및 <u>아동·여성보호</u>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·제도 개선사항 심의·건의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(1)부시장, 제1정책보좌관(복지·여성정책보좌관)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(1)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, 제1정책보좌관(복지·여성정책보좌관),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<u>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와 아동·여성보호 및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2. <u>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 또는 아동·여성 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</u></p> <p>3.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노인·장애인복지 및 <u>여성·가족보육</u>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·제도 개선사항 심의·건의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{삭제}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<u>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2.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</p> <p>3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</p>

현행	개정안
(신설)	4. <u>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</u>
(신설)	5. <u>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체의 대표자</u>
(신설)	6. <u>공익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</u>
(신설)	7. <u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</u>  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u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